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7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유용원·강대식·강선영

이종배 • 한기호 • 김기웅

임종득 · 김용태 · 성일종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군인 급식 규정」(대통령령)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(주식과 부식)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 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 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 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 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.

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2항 및 제3

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(이하 이 조에서 "현물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다만, 참모총장이 영외거주(營外居住)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급식비"라 한다)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, 훈련,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하여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3조(실비변상) (생 략)	제53조(실비변상) ① (현행 제목		
	외의 부분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		
	식(이하 이 조에서 "현물"이라		
	한다)을 지급한다. 다만, 참모		
	총장이 영외거주(營外居住)를		
	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		
	하여 일정한 금액(이하 이 조		
	에서 "급식비"라 한다)을 현금		
	으로 지급할 수 있다.		
<u><신 설></u>	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		
	영외거주 군인이 작전, 훈련,		
	야간 및 휴일 근무 등으로 인		
	하여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		
	는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		
	<u>아니한다.</u>		